

2023년도 제1회 및 제2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구분모집)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총 계				981		
제 1 회 임 용 시 험 (6.10.)	제 1 회 임용시험 소계			894		
	8급	간 호	간 호	17	춘천 3, 강릉 2, 속초 1, 삼척 1, 홍천 2, 영월 1, 정선 3, 철원 2, 양양 2	
		보건진료	보건진료	6	춘천 1, 원주 2, 평창 2, 정선 1	
	9급	행 정	일반행정	373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13, 춘천 24, 원주 26, 강릉 44, 동해 11, 태백 37, 속초 18, 삼척 18, 홍천 20, 횡성 17, 영월 21, 평창 8, 정선 16, 철원 9, 화천 14, 양구 4, 인제 10, 고성 21, 양양 7 <지방의회> 강원도의회 6, 춘천시의회 3, 원주시의회 2, 홍천군의회 3, 횡성군의회 3, 영월군의회 1, 평창군의회 1, 정선군의회 2, 철원군의회 4, 화천군의회 4, 양구군의회 2, 인제군의회 3, 양양군의회 1	
				일반행정 (장애인)	57	강원도 3, 춘천 5, 원주 2, 강릉 1, 동해 1, 태백 2, 속초 2, 삼척 3, 홍천 8, 횡성 2, 영월 3, 평창 2, 정선 2, 철원 4, 화천 1, 양구 3, 인제 5, 고성 7, 양양 1
				일반행정 (저소득층)	17	춘천 2, 원주 2, 태백 1, 속초 1, 삼척 1, 홍천 1, 횡성 1, 영월 1, 정선 2, 철원 1, 양구 1, 인제 1, 고성 1, 양양 1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구분모집)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제 1 회 임 용 시 험 (6.10.)	공 개 경 쟁	9급	세 무	지 방 세	24	춘천 2, 원주 2, 강릉 3, 동해 1, 삼척 3, 횡성 3, 영월 3, 평창 1, 정선 1, 철원 2, 화천 1, 양구 1, 고성 1
				지 방 세 (장애인)	2	강릉 1, 횡성 1
				지 방 세 (저소득층)	3	강릉 1, 화천 1, 고성 1
			전 산	전 산	13	강원도 2, 춘천 1, 원주 1, 강릉 3, 속초 1, 홍천 1, 횡성 1, 영월 1, 양구 1, 고성 1
				전 산 (장애인)	1	강릉 1
				전 산 (저소득층)	2	강원도 1, 강릉 1
			사회복지	사회복지	52	강원도 2, 춘천 3, 원주 4, 강릉 8, 동해 3, 속초 3, 삼척 2, 홍천 6, 횡성 5, 평창 1, 정선 4, 철원 2, 화천 3, 양구 1, 고성 5
				사회복지 (장애인)	10	춘천 1, 원주 1, 강릉 1, 동해 1, 삼척 1, 홍천 1, 횡성 1, 정선 1, 화천 1, 고성 1
				사회복지 (저소득층)	1	평창 1
		사 서	사 서	15	춘천 3, 원주 2, 강릉 1, 동해 1, 홍천 2, 평창 2, 정선 2, 화천 1, 고성 1	
		숙 기	숙 기	4	<지방의회> 강원도의회 2, 횡성군의회 1, 고성군의회 1	
		공 업	일반기계	18	강원도 5, 춘천 3, 원주 3, 동해 1, 삼척 1, 횡성 1, 정선 2, 고성 1, 양양 1	
			농업기계	10	강원도 2, 강릉 2, 철원 4, 화천 1, 인제 1	
			일반전기	10	원주 3, 속초 1, 횡성 1, 정선 1, 철원 1, 양구 2, 고성 1	
			자 원	1	강릉 1	
		농 업	일반농업	28	강원도 2, 춘천 2, 원주 3, 강릉 3, 삼척 2, 홍천 2, 횡성 2, 영월 4, 평창 2, 정선 2, 철원 2, 양구 1, 고성 1	
			축 산	13	강원도 3, 원주 1, 홍천 1, 횡성 1, 영월 2, 평창 1, 철원 2, 인제 1, 고성 1,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구분모집)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제 1 회 임 용 시 험 (6.10.)	공 개 경 쟁	9급	녹 지	산림자원	22	강원도 7, 춘천 2, 원주 3, 홍천 1, 횡성 1, 영월 1, 정선 2, 철원 2, 양구 1, 양양 2			
				조 경	4	강원도 2, 강릉 1, 정선 1			
			해양수산	일반수산	28	강원도 27, 화천 1			
			보 건	보 건	11	춘천 3, 강릉 2, 삼척 1, 횡성 1, 영월 1, 철원 2, 양구 1			
			식품위생	식품위생	3	원주 1, 강릉 2			
			환 경	수 질	일반환경	23	강원도 3, 춘천 2, 원주 3, 강릉 2, 동해 1, 속초 1, 삼척 3, 홍천 1, 횡성 1, 정선 2, 철원 2, 화천 1, 고성 1		
					대 기	1	철원 1		
					도시계획	1	강릉 1		
			시 설	건 축	일반토목	53	강원도 11, 춘천 3, 원주 4, 강릉 3, 동해 3, 속초 3, 삼척 5, 홍천 5, 횡성 3, 정선 3, 철원 5, 화천 2, 고성 1, 양양 2		
					건축	35	강원도 6, 춘천 3, 원주 1, 강릉 7, 동해 1, 속초 1, 홍천 5, 횡성 1, 정선 2, 철원 3, 화천 1, 양구 1, 고성 1, 양양 2		
					지 적	16	강원도 3, 춘천 1, 원주 3, 강릉 1, 동해 1, 횡성 1, 평창 1, 철원 3, 화천 1, 양양 1		
					디 자 인	1	춘천 1		
					방재안전	방재안전	9	강원도 2, 춘천 2, 강릉 2, 속초 1, 횡성 1, 평창 1	
			방송통신	통신기술	7	원주 1, 강릉 2, 정선 1, 철원 1, 고성 2			
			제 2회 임용시험 소계				87		
			제2회 임용 시험 (10.28.)	경 력 경 쟁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1	강릉 1
						학예연구	학예일반	5	원주 2, 강릉 1, 태백 1, 인제 1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구분모집)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제 2 회 임 용 시 험 (10.28.)	경력경쟁	연구사	녹지연구	임 업	3	강원도 3	
			농업연구	농 공	2	강원도 2	
				산업곤충	1	강원도 1	
				축 산	1	강원도 1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24	강원도 4, 태백 4, 속초 1, 삼척 1, 홍천 3, 영월 2, 평창 1, 화천 3, 양구 4, 인제 1	
		9급	공 업	기계운전	5	강원도 5	
				운 전 운 전	18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1, 춘천 4, 원주 3, 강릉 1, 속초 1, 삼척 1, 홍천 2, 영월 2, 양구 2 <지방의회> 홍천군의회 1	
			의료기술	의료기술 (물리치료)	1	강릉 1	
				의료기술 (방사선)	4	삼척 1, 정선 2, 고성 1	
				의료기술 (임상병리)	4	강릉 1, 홍천 1, 화천 1, 양구 1	
				의료기술 (작업치료)	2	강릉 1, 속초 1	
				의료기술 (치과위생)	2	춘천 1, 삼척 1	
			해양수산	선박기관	1	강원도 1	
			기술계 고졸	공 업	일반기계	3	춘천 1, 원주 1, 속초 1
					일반전기	2	춘천 1, 속초 1
				농 업	일반농업	2	삼척 1, 양구 1
					축 산	1	홍천 1
				보 건	보 건	1	강릉 1
				시 설	일반토목	3	강원도 1, 강릉 1, 정선 1
		건 축			1	강원도 1	

- 임용예정기관을 ‘강원도’ 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강원도 소속 공무원으로 강원도청 및 강원도청 소속 직속기관·사업소 등에서 근무합니다.
- 임용예정기관을 ‘시·군’ 으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청 및 소속 기관 등에서 근무합니다.
- 임용예정기관을 ‘강원도의회’ 및 ‘각 시·군의회’ 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합니다.

2. 시험과목

※ 파란색 표시과목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임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구분모집)	시 험 과 목 (제1·2차 병합시험)
제 1 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8급	간 호	간 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건진료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9급	행 정	일반행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세 무	지 방 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전 산	전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 서	사 서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 기	속 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공 업	일반기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기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일반전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자 원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원개발, 자원처리
		농 업	일반농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 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구분모집)	시 험 과 목 (제1·2차 병합시험)
제 1 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9급	녹 지	산림자원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 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양수산	일반수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 건	보 건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위생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환 경	일반환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수 질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대 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대기오염개론
		시 설	도시계획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디 자 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방송통신	통신기술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구분모집)	시 험 과 목 (제1·2차 병합시험)		
제 2 회 임 용 시 험	경 력 경 쟁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 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녹지연구	임 업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농업연구	농 공	물리학개론, 유체역학, 농작업기계학	
				산업곤충	잠학개론, 양잠학, 곤충학	
				축 산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9급	공 업	기계운전	기계일반, 기계설계	
				운 전	운 전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의료기술	의료기술 (물리치료) (방사선) (임상병리) (작업치료) (치과위생)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해양수산		선박기관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공 업		일반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 업		일반농업	생물, 재배, 농업생산환경		
			축 산	축산, 가축사양, 초지		
	보 건		보 건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 설		일반토목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 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행정학은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2020년부터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을 적용하여 점자문제지가 제공됩니다.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안내】

(제2회 임용시험) 기술계 고졸 구분모집의 시험과목 중 물리, 생물, 측량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리는 물리학 I, 생물은 생명과학 I,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3.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12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과락(만점의 40% 미만)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 단,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합니다.

나. 시험시간

시험명	직 급	시험시간	비 고
제1회 임용시험	8·9급 공개경쟁	100분 (10:00 ~ 11:40)	-
제2회 임용시험	연구사·지도사 및 9급 경력경쟁	60분 (10:00 ~ 11:00)	단, 기록관리 연구사는 120분(10:00~12:00) 기계운전 9급, 운전 9급은 40분(10:00~10:40)

4. 문제출제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험구분	공개 대상 과목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37개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공중보건, 보건행정,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회계학, 간호관리
제2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11개 과목)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생물, 재배 ※ 기계일반 과목의 경우 기술계고졸 공업(일반기계) 직류에 해당함

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이외에 **강원도에서 자체출제**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시험구분	비공개 대상 과목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18개 과목)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자원개발, 자원처리, 가축사양, 가축육종,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수산일반, 수산경영,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수질오염개론, 대기오염개론,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제2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38개 과목)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 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물리학개론, 유체역학, 농작업기계학, 잠학개론, 양잠학, 곤충학,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선박일반, 선박기관, 농업생산환경, 축산, 가축사양, 초지, 환경보건, 공중보건 ※ 기계일반 과목의 경우 9급 공업(기계운전) 직류에 해당함

5.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나.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 2023년부터 거주지 요건이 변동됩니다. [붙임 6] 참고

-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① 해당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해당연도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단, 아래 임용예정기관의 「행정9급(일반행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은 해당없음

임용예정기관	거주지 요건
동해시 삼척시	▶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해당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 로 되어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② 해당연도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 로 되어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 인 사람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해당연도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시·군 으로 되어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 인 사람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1번, 2번)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합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의 응시대상자 중 강원도 내 소재 기술계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 거주지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강원도 외 타 지역 소재 기술계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음 직류 및 임용예정기관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 분	직 류 (구분모집)	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비 고
제2회 임용시험 (10.28.)	기계운전	강원도	5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8·9급	18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제2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연구사·지도사	20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9급	18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 단, 제2회 임용시험 「기술계 고졸채용」 구분모집에 한하여, **현재 고교 3학년 재학생 중에서** 조기 입학한 17세(2006.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 2024년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라. 학력·자격(면허)증 제한(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해당 학력·자격(면허)증
제1회 임용시험 (6.10.)	8급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9급	전 산	전 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2·3급
		시 설	지 적	기술사·기사·산업기사 : 지적
제2회 임용시험 (10.28.)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년 5월 23일 이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이수한 사람
		학예연구	학예일반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민속학 또는 보존과학을 전공한 사람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해당 학력·자격(면허)증	
제2회 임 용 시 험 (10.28.)	연구사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농업연구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붙임 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등 참고)	
	운 전	운 전	운 전	제1종 운전면허(대형) 취득 후, 대형승합 또는 대형화물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자동차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준 확인	
				공 업	기계운전
	해양수산	선박기관	6급 기관사 이상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물리치료	물리치료사
				방사선	방사선사
				임상병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	작업치료사
				치과위생	치과위생사
				기술계 고졸	공 업
일반전기					
농 업	일반농업				
	축 산				
보 건	보 건				
시 설	일반토목				
	건축				

(1)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 기준으로 합니다.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 제2회 임용시험(경력경쟁, 2023.10.28.)의 기계운전 9급, 운전 9급 직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내역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5] 참조
 - ※ 2024년도부터 전산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가산대상 자격증이 신설됩니다. * [붙임 6] 시험제도 변경사항 사전 안내 참조

(2) 연구사·지도사 응시자격 요건 유의사항

- '00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 '00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이라 함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합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이라 함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등 복지관련 부서)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 시 수급(지원)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기술계 고졸(예정)자

○ 추천기준

- 강원도 내 소재 기술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선발예정 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타 지역 소재 기술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선발예정 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하고,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
 - ※ 2023년도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 가능
 -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 포함 * 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2023.6.30.) 기준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① 추천대상자(최종학력 : 고졸)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하되, 해당여부는 시험시행 연도의 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2023.6.30.) 기준으로 판단함
 -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 및 임용이 무효처리됨

② 추천학과

- ▶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 직류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2]의 '직무분야별 학과'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본 공고문 [붙임 3] 참고)
 - ※ 단,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을 적용함(2024년부터 적용)

③ 학과성적 기준

- ▶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학년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사람

④ 성적합산 기준

- ▶ (졸업자) 고등학교 소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추천서 제출(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 제출기간 : 2023. 6. 26.(월) ~ 6. 30.(금)

- 제출장소 :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 응시자 개인별 접수는 받지 않으며 해당학교에서 추천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검증 후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서류제출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음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 [붙임 1] 추천서 서식 참조

- 추천현황표(서식 3) 1부, 추천서(서식 4)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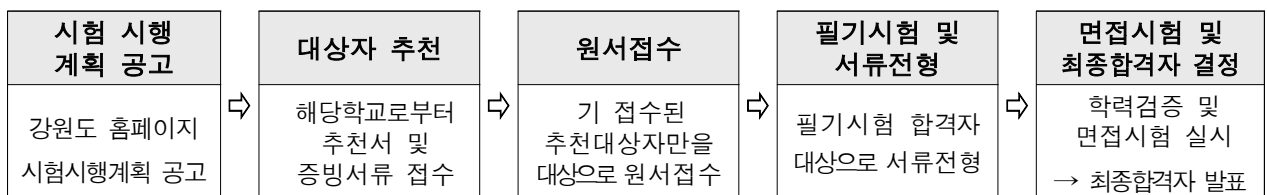
- 성적증명서 1부.(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대학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 1부.

- 응시자 서약서(서식 5)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6)

- 타 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2023.1.1 이전부터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또는 2023.1.1 이전까지 강원도 내 거주기간이 3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출)

○ 시험단계별 절차(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 처리함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3. 13. (월) ~ 3. 17. (금) (취소마감: 3.20.(월) 24:00)	필 기	5.25.(목)	6.10.(토)	7.13.(목)
		면 접	7.13.(목)	7.24.(월)~ 8.4.(금)	9.1.(금)
제2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7. 17. (월) ~ 7. 21. (금) (취소마감: 7.24.(월) 24:00)	필 기	10.6.(금)	10.28.(토)	11.22.(수)
		면 접	11.22.(수)	12.4.(월)~ 12.5.(화)	12.21.(목)
장애인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신청자 증빙서류(붙임 2 참조) 제출기간		- 제1회 : 2023. 3.13.(월) ~ 3.20.(월) - 제2회 : 2023. 7.17.(월) ~ 7.24.(월)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7·9급 등 공무원 임용시험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 1522-0660 / 문의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연구사·지도사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나. 응시수수료의 환급

○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과오납 금액

○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또한,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1개 지방자치단체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점은 등록기간 내에 수정 가능)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해상도 100dpi 이상, 크기 3.5cm × 4.5cm 기준)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등록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 등)별 및 임신부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붙임 2]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모집단위(임용예정기관 및 직급·직류, 구분모집)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 임용시험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 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합격제

-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실시방법 : 모집단위(임용예정기관 및 직급·직류, 구분모집)별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일반모집 인원이 없거나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10.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직렬(직류)별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자격증별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직 급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일반행정)	9급	변호사, 변리사	5%
사회복지(사회복지)	9급	변호사	
세무(지방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건(보건)	9급	임상심리사 1급·2급	

○ 기술직군 및 연구사·지도사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상기 표에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자격증별 가산비율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7의4]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을 따름(붙임 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 단, 해당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가산점 적용을 제외**합니다.

<p>《가산점 적용 제외 직류》</p> <p>- (제1회 임용시험) : 간호, 보건진료, 전산, 사회복지, 사서, 속기, 지적</p> <p>- (제2회 임용시험) : 운전, 기계운전, 선박기관, 의료기술</p>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됨)**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점 등록(수정)기간은 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등록기간
제1회 임용시험(6.10.시행)	2023. 6. 10.(토) ~ 6. 12.(월)
제2회 임용시험(10.28.시행)	2023. 10. 28.(토) ~ 10. 30.(월)

-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의 경우는 반드시 가산비율과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 가산자격증을 입력하지 않거나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자격증 가산점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

11.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제출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이며, 과락(만점의 40% 미만)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의미합니다.
-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해당 임용기관별로 임용된 날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전출제한 5년**

<지방자치단체>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방의회>

강원도의회, 춘천시의회, 강릉시의회, 동해시의회, 태백시의회, 속초시의회, 삼척시의회, 홍천군의회, 횡성군의회, 영월군의회, 평창군의회, 정선군의회, 철원군의회, 화천군의회, 양구군의회, 인제군의회, 고성군의회, 양양군의회

◇ **전출제한 3년**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지방의회> 원주시의회

※ 단,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합격자는 4년 이내 타 지방자치단체 전출 제한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수정테이프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문자 등 개별 통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227, 2218, 2548)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